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362-14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규제를 풀면 시민이 행복합니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부산이 규제혁신도시로 거듭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오거돈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출범이후 新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시민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정책가치·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규제혁신의 어려움, 공무원의 소극행정, 소통부족으로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1년간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혁파, 공무원 업무행태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상하여 '규제혁신도시' 부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우수)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우수)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장려)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사례를 포함하여 일반행정, 문화·관광 분야 등 10개 분야의 우수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담긴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일선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어 규제혁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속 불편사항과 기업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는 언제든 건의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가 공유되고 확산되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목차
Contents

제1장 일반공공행정

1.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8
2. 자가통신망 이용규제 개선 9
3.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10
4. 도로점용 신청에서 허가까지 ONE-STOP 처리 11
5.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내역서」 공개 12
6.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 검사조서 송부기한 명확화 13

제2장 공공질서 및 안전

7. 긴급상황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 승인 규제 완화 15
8.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긴급 비행 적용범위 확대 16
9.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고도 기준 완화 17
10.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18
11. 전국 최초 이동형 119구급센터 운영 19
12.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 보장 20

제3장 문화 및 관광

13. 작은 도서관의 설립기준 완화 22
14.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23
15.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24
16. 노포체육시설 이용 방법 개선 25

제4장 환경보호

17. 적극행정으로 공업지역 환경 개선 27

제5장 사회복지

18.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 29
19.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상향으로 진입규제 완화 30
20.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처리기한 개선 31
21. 자활기금 대여이자율 인하 32
22.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 규제 완화 33
23.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무상임대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4

제6장 보건

24. 약국 양도 양수 절차 간소화 36

제7장 농림해양수산

25. 수상레저(요트)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38
26. 해양자연사박물관 시설 대관허가 제한 완화 39
27. 숭어들망 포획방법 개선을 통한 어업환경 개선 40
28. 동(洞)지역 어촌민박 가능지역 지정 41
29. 조례 제정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42

제8장 산업·중소기업

30. 데이터센터 신축관련 건축규제 개선 44
31. VR(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중복 규제 일원화 45
32. 화학물질관리 기술인력 선임 기준 완화 46
33. 공공자원 개방을 통한 청년 비즈니스 공간 제공 47
34. 청소대행업체 구조 및 선정방법 개선 48
35.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절차 규제 완화 49
36.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사유 명확화 50
37. 하천구역내 드론공원 설치가능토록 규제 개선 51
38. 전기차 폐차 후 반납된 장치·부품에 대한 사후활용 규정 마련 52

제9장 수송 및 교통

39. 부산진구 전역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54
40. 국유지 활용한 주차난 해소 55
41. 수영세무서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 56

제10장 국토 및 지역개발

42. 건설업(종합·전문)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58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 59
44.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개정 60
4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대상요건 완화 61
46. 동삼하리지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으로 개발사업 기틀 마련 62
47. 구유지 매각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부담 경감 63
48. 공동주택관리지원 방법 개선 64
49.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65
50.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66

부록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68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70



제1장

일반 공공행정

1.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2. 자가통신망 이용규제 개선
3.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4. 도로점용 신청에서 허가까지 ONE-STOP 처리
5.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내역서」 공개
6.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 검사조서 송부기한 명확화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602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01

행정안전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개선배경

- 2015년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을 운영하여 지역기업의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개선하여 경제활성화와 불편 해소
-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친밀감을 위해 '19년부터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으로 추진단명을 애칭화하여 현장중심의 체감형 규제발굴단으로 운영 확대

개선내용

개선 전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 기업·단체(협회)에 직접 방문,
  규제 애로사항 청취·개선

개선 후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
- 기존 운영방법 + 전시회·박람회
  규제신고센터 부스 운영(확대)

- 운영계획 수립('19. 1.), 기업·단체 현장 방문 상담, 전시회장 내 상담부스 설치·운영('19. 2.~12.),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는 중점과제로 선정, 중앙부처(국조실, 행안부, 중기부 등) 협업 강화 등으로 규제혁신 추진

개선효과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정책에 반영
- 전시장·행사장 내 부스 운영으로 행사 참관객 대상 규제혁신 홍보 확대





추진부서 스마트시티추진과 (051-888-4554),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595)

자가통신망 이용규제 개선

02

개선배경

- 지방자치단체 자가망 연계 활용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통한 교통, 환경, 방범·방재 4개 분야 관련 도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만 가능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인 자가통신망 이용범위 확대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특례범위)
- 교통, 환경, 방범·방재 업무

개선 후

(특례범위)
- 교통, 환경, 방범·방재 업무
- (추가) 행정·보건·의료·복지 등 19종

- 규제혁신 TF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자가통신설비 이용범위 확대 건의('18.10.), 규제혁신 TF회의('18.11.),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일부 개정 시행('19.3.)

개선효과

- 분야별 단절된 도시 데이터 상호 연계로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추진부서 부산진구 세무2과(051-605-4813)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03

개선배경

- 취득세 세율, 신고서류 및 신고납부 절차와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법무사 비용 절감을 위해 셀프등기에 대한 문의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기소 등 3개 영역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원스톱 안내 부재로 인하여 셀프등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 가중

개선내용

개선 전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 취득세 신고 : 구청 세무과
- 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 금융기관
- 등기 : 대법원 산하 소관 등기소

개선 후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 QR 코드란** Quick Response cod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뜻하며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2차원 바코드임.

-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17. 2.~'18. 3.) 및 "부동산 취득세 간편안내" 책자 제작·배부(8,600부), QR코드 자체 개발하여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원스톱 안내 실시('17.11.)

개선효과

- **3개 영역 통합한 원스톱 QR코드 안내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





추진부서 북구 도시관리과(051-309-4862)

도로점용 신청에서 허가까지 ONE-STOP 처리

04

개선배경

-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위하여 신청인은 허가 신청 및 완료후 허가증 수령을 위하여 구청을 2회 이상 방문하여야 함



개선내용

개선 전

(구청 방문)

- 2회 이상 방문

개선 후

(구청 방문)

- 1회 방문
- 온라인(email) 허가증 발급

- 북부경찰서와 도로공사 신고(온라인 허가증)에 관한 검토 협의('19. 1.), 도로점용 허가증 온라인(이메일) 교부('19. 1.)

개선효과

- **ONE-STOP 도로점용 허가로 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추진부서 사상구 회계재산과(051-310-4145)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원가내역서」 공개 05

개선배경

· 공사 발주 전 설계서의 정확한 검토 및 건설공사 원가내역서 공개로 예산 절감과 계약의 투명성 확보

개선내용

개선 전

(공개대상)

-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사항 등 전 과정
- 단,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청구 시

개선 후

(공개대상)

-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사항 등 전 과정
- (추가) 설계내역서 및 도급계약서* (계약금액 기준 5억이상 건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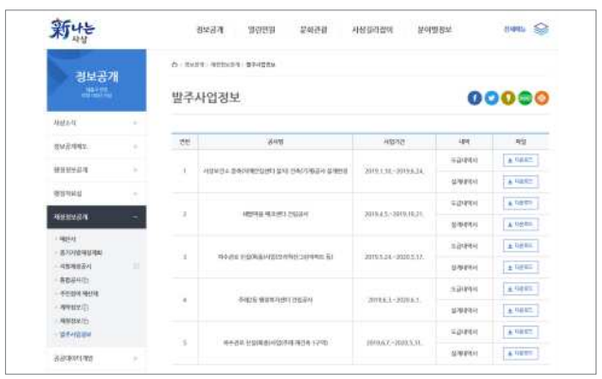
*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설계변경 후 7일 이내)

· 구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18. 8.), '18. 9. 1. 계약 건부터 공개

개선효과

· 대규모 건설공사 원가내역 공개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구정예산의 사용내역 공개를 통한 구민 알권리 충족





추진부서 부산교통공사 계약부(051-640-7198)

대금 적기 지급을 위한 검사조서 송부기한 명확화 06

개선배경

· 공사 또는 용역 완료 후 내부 행정 처리절차 기간이 불명확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이 늦어져 민원 제기

· 준공 검사완료 후 검사조서 송부기한 명확화

개선내용

개선 전

(처리기간)

- 발주부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조서 송부

개선 후

(처리기간)

- 발주부서장은 검사원 임명통지를 받거나 임명한 날로부터 11일 이내 계약부서로 검사조서 송부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정비 추진('18.12.)하여 계약사무처리 내규 개정('19. 5.)

개선효과

· 대금 적기 지급으로 소상공인·기업 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





제2장

공공질서 및 안전

7. 긴급상황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 승인 규제 완화
8.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긴급 비행 적용범위 확대
9.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비행고도 기준 완화
10.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11. 전국 최초 이동형 119구급센터 운영
12.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 보장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긴급상황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 승인 규제 완화

07

행정안전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개선배경

- 사전승인 대상지역*에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최소 3일 전 승인기관(지방항공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만 가능

* 사전승인 대상지역(①관제권 + ②비행금지구역 + ③고도 150m이상)



①관제권	②비행금지구역	③고도150m이상
비행장 주변 관제권에서 비행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서울 강북지역, 휴전선·원전 주변)	지상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 (지면, 수면, 장애물 기준 150m 이상)

- 사전승인 대상지역에서 긴급한 재해(화재·재난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용 드론의 즉시 비행 사실상 불가
  ※ **경찰용, 세관용, 군용**은 사전승인 없이 가능(국제민간항공조약 근거 **항공안전법 적용배제**)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사전승인 대상지역) – 비행 최소 3일전 신청, 승인후 비행가능	**(사전승인 대상지역)** – 유선통보 후 즉시 비행 가능

- "2018 드론쇼 코리아" 행사장 내 운영된 '찾아가는 이동규제신고센터'('18. 1.)를 통해 규제건의, 중앙부처와 규제개선 협의('18. 2.~4.)를 거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8.11.)

개선효과

-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용 드론의 즉시 투입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긴급 비행 적용범위 확대

08

개선배경

· 소방용 드론의 긴급비행 적용범위가 소방, 산림 분야로 국한되어 초고층 건물 화재, 풍수해, 수질 오염 시 긴급 점검 등의 경우 선제적 투입 곤란

개선내용

개선 전

(공공목적 긴급비행)

1. 산불의 진화 및 예방
2. 응급환자 장기이송 등 구조·구급
3. 산림방제·순찰
4.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개선 후

(공공목적 긴급비행)

- 1.~4. (상동)
- 5.~9.* 추가

* 5.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6.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또는 우려 시 안전진단, 7. 풍수해 및 수질오염발생 시 긴급 점검, 8. 테러 예방 및 대응, 9. 그 밖에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목적의 업무수행

· "2018 드론쇼 코리아"행사장 내 운영된 '찾아가는 이동규제신고센터'('18. 1.)를 통해 규제건의, 중앙부처와 규제개선 협의('18. 2.~4.)를 거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8.11.)

개선효과

· 드론의 긴급 투입 가능한 범위의 확대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구조 효율성 향상으로 시민 안전 확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고도 기준 완화

09

개선배경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음

*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고도 150m

개선내용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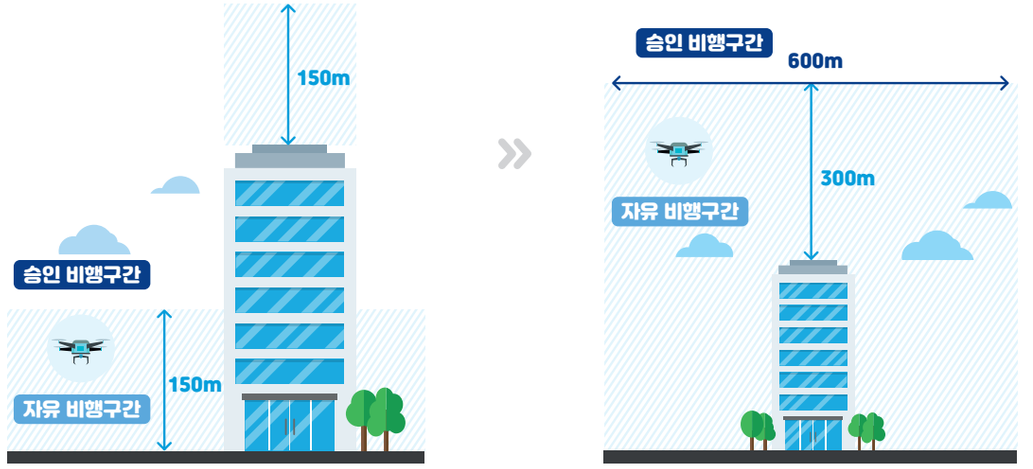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고도)

-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m 고도

개선 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고도)

-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300m 고도



· "2018 드론쇼 코리아"행사장 내 운영된 '찾아가는 이동규제신고센터'('18. 1.)를 통해 규제건의, 중앙부처와 규제개선 협의('18. 2.~4.)를 거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8.11.)

개선효과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효율 극대화

추진부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051-760-3111)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10

행정안전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개선배경

- 급성심근경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병원 도착 전 심전도 측정이 중요하나,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측정·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

개선내용

개선 전

(심전도 측정)

-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이송중 심전도 측정 불가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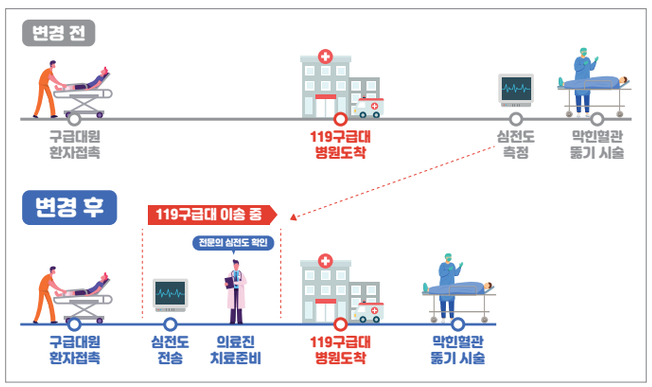
(심전도 측정)

-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이송중 **심전도 측정·결과 병원 전송**

- 119 구급대원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이송중 심전도 전송 시범사업 실시(1차 '16년, 2차 '18년), 청와대 국민청원('18.11.) 등을 통해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법안 발의('19. 5.)

개선효과

- **병원도착 전 심전도 측정결과를 받은 의사가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 병원도착 즉시 시술 가능하게 되어 급성심근경색환자의 생존율 향상**





추진부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051-760-3111)

전국 최초 이동형 119구급센터 운영

11

개선배경

- 도시성장과 새로운 인구 밀집지역 형성으로 구급대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구급서비스 취약지역 발생
- 취약지역 대응을 위한 119안전센터의 신축·이전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 소요



개선내용

개선 전

(센터 신축·이전 기간중)

- 구급서비스 취약지역 발생

개선 후

(센터 신축·이전 기간중)

- **이동형 구급센터 배치**로 구급서비스 취약지역 **선제적 대응**

- 구급대원 의견수렴('18. 2.), 이동형 구급센터 설치 추진('18. 3.~9.), 이동형 119구급센터 배치·운영('18.10.)

개선효과

- **신속한 구급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추진부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051-760-3012)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 보장 12

개선배경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7. 8.)으로 의용소방대 부대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음
- 조례에서는 부대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부대장 연임) - 1회로 제한	»	**(부대장 연임)** - 횟수 제한없이 연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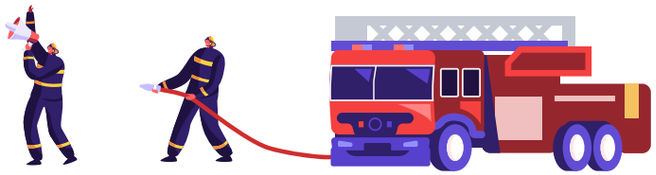
-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18. 2.)으로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연임이 횟수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18. 5.)

개선효과

-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보장**







제3장

문화 및 관광

13. 작은 도서관의 설립기준 완화
14.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15.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16. 노포체육시설 이용 방법 개선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추진부서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65)

작은 도서관의 설립기준 완화 13

개선배경

-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확대와 도서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으나, 작은 도서관의 설립기준이 상위법 보다 엄격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설립기준 정비할 필요성 제기

개선내용

개선 전

(설립 기준)

-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 모호한 설립기준

개선 후

(설립 기준)

-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삭제
- 모호한 설립기준 삭제

- 입안계획 수립('18.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시행('18.11.)

개선효과

- 작은도서관 신규 설립 시 불필요한 과정 및 기준 개선을 통한 설립기준 완화로 관내 작은 도서관 확대와 활성화 기여





추진부서 부산진구 관광위생과(051-605-4524), 해운대구 관광문화과(051-749-4086)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14

개선배경

-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등록기준이 국내여행업 3천만원, 국외여행업 6천만원, 일반여행업 2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사업등록시 자본금 기준이 높아 소규모 영업자들의 사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내용

개선 전

(자본금 등록기준)

- 일반여행업 : 2억원 이상
- 국외여행업 : 6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 : 3천만원 이상

개선 후

(자본금 등록기준)

- 일반여행업 : 1억원 이상
-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 : 1천5백만원 이상

-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18. 3),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18. 7.)

개선효과

-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로 관광사업에 대한 창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추진부서 금정구 평생교육과(051-519-5634)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15

개선배경

- 뉴타운 지정 해제지역으로 지정기간 동안 개발제한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지역의 환경개선 필요성 대두
- 문화가 있는 주민공동체 시설인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조성

개선내용

개선 전

(주거환경 낙후지역)

– 다가구주택

개선 후

(주거환경 낙후지역)

– 다가구주택 매입,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

*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 건물 매입 및 실시 설계·리모델링 공사('17. 7.~'18. 6), 작은도서관 활성화계획 수립('19. 1.), 은빛 사랑채(실버 특화) 작은도서관 개관('19. 4.)

개선효과

- 주거환경 낙후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독서환경 개선과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기존 주택을 활용한 시설 개선으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인프라 구축





추진부서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051-509-4304)

노포체육시설 이용 방법 개선 16

개선배경

- 노포차량사업소 체육시설(축구장)* 예약 시 제출서류중 이용자 명단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일요일만 개방하는 무료 개방시설로 이용일 전월 20일까지 사전 신청하여 담당자 승인 후 사용 가능하며 개방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임

개선내용

개선 전

(제출서류)

– 시설 사용자(전원) 명단
(개인정보 포함)

개선 후

(제출서류)

– 시설 사용자(전원) 명단
(개인정보 포함) 삭제

-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추진('18.12.), 노포차량사업소 체육시설 운영지침 개정('19. 5.)

개선효과

- 체육시설 이용신청 방법을 간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제4장

환경보호

17. 적극행정으로 공업지역 환경 개선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적극행정으로 공업지역 환경 개선

17

개선배경

- 산업단지에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 악화로 지속적인 불편 호소

  * 사하구 전체 면적 : 공업지역(산업단지 포함) 22.4%, 주거지역 : 25%

개선내용

개선 전

(환경개선)

- 대기질, 소음 등 생활환경 악화

개선 후

(환경개선)

- 조례 제정으로 환경개선 기반 마련
- 민관 환경개선 정책* 체계적 추진

  * 공업지역 수림대 조성, 기업의 자체 환경개선방안 시행, 교육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악취저감시설 개선·인근하천 수질관리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7. 9.),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17. 9.), 행정과 기업체간 상호협력을 통한 정책추진('18. 1.~'19.12.)

개선효과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 제시
-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제 5장

사회복지

18.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
19.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상향으로 진입규제 완화
20.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처리기한 개선
21. 자활기금 대여이자율 인하
22.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 규제 완화
23.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무상임대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절차 개선

18

개선배경

-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 재방문하는 불편 발생
- 자동차등록증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지참	**(구비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가능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19. 4.)

개선효과

-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로 신청인 편의 증진**









추진부서 영도구 복지사업과(051-419-4372)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상향으로 진입규제 완화 19

개선배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토록 되어 있음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법령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맞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장애인 고용비율)

-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

개선 후

(장애인 고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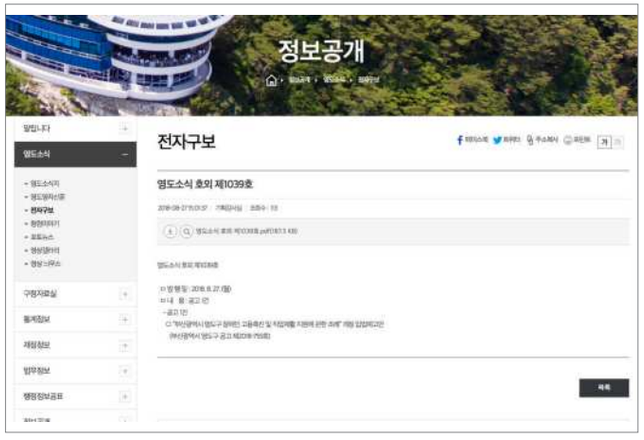
- 정원*의 1천분의 32이상 고용 ('18.12.31.까지)
- 정원*의 1천분의 34이상 고용 ('19.1.1. 이후)

* 영도구청, 산하기관

- 입안계획 수립('18.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18.11.)

개선효과

- 장애인 권리 보호 향상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개 정 전	개 정 후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정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이상,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

추진부서 동래구 생활보장과(051-550-4782)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처리기한 개선 20

개선배경

- 맞춤형 급여 등 타 복지 급여결정시 금융재산 자료 요청후 회신까지 3주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한부모가족의 지원 및 복지급여 결정시 동일한 과정이 필요하나 신청자에 대한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정보 회신 지연 등의 사유로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안내가 반복되고 있어 민원 불편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

개선 후

(처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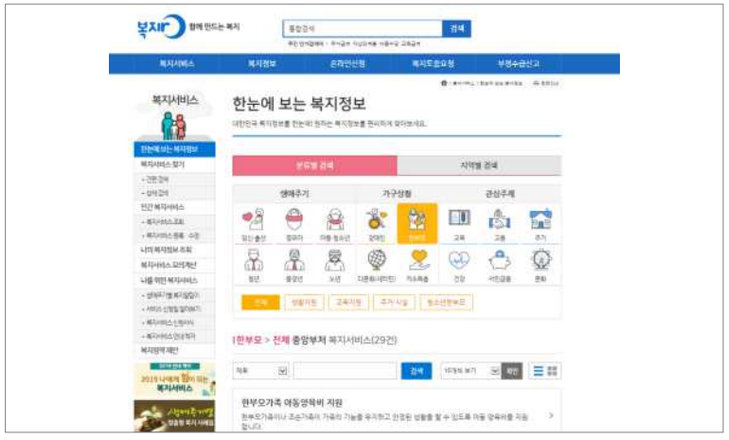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출('18.),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18. 5.)

개선효과

-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반복 등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성 제고





추진부서 해운대구 복지정책과(051-749-6132)

자활기금 대여이자율 인하 21

개선배경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및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시 2천만원~1억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연 2%, 연체시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조례에 정함
- 영세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에서 이자금액 납부에 대한 부담 발생으로 대여이자율 인하를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모색

개선내용

개선 전

(이자율)

- 대여자금 : 연 2퍼센트 이내
- 연체 : 연 15퍼센트

개선 후

(이자율)

- 대여자금 : 연 1.5퍼센트 이내
- 연체 : 연 10퍼센트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의 대여이자율을 인하하는 해운대구 자활기금조례 개정('18. 2.)

개선효과

- 영세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의 대여자금 이자율 인하를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사업자금 대여) ① (생략) ② (생략)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생략)	제7조(사업자금 대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연 1.5퍼센트 이내---, ---------- 연 10퍼센트 ---------- ④(현행과 같음)

추진부서 사상구 복지정책과(051-310-4315)

참전유공자의 지원대상 규제 완화 22

개선배경

-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로 일정기간(1년) 이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제한하여 규정함.

개선내용

개선 전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개선 후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8. 6.)

개선효과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조에 해당되는 사유에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개정 2017. 06.02>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6.28.> <삭제 2018.6.28.> 1. <삭 제>2018.6.28. 2. <삭 제>2018.6.28. 3. <삭 제>2018.6.28.



추진부서 북구 주민복지과(051-310-4315)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무상임대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3

개선배경

- KT금곡지사 부지(북구 금곡동 1878번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건축물 내 타 시설 입점 불가
- 통신시설 경량화 및 통신설비 소형화, 집적화로 통신시설내 유휴공간 증가로 유휴공간의 합리적 이용 필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1.11.1.)

개선내용

개선 전

(방송·통신시설:전화국)

- 유휴공간 활용 불가

개선 후

(방송·통신시설:전화국)

- 유휴공간 활용 가능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주)KT)('16.11.), 방송통신시설과 업무시설 용도 비율을 지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17. 9.), 부산 북구청-(주)KT 무상임대차 계약('18.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18.11.)

개선효과

- 돌봄공동체 형성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 공간 제공





제6장

보건

24. 약국 양도 양수 절차 간소화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추진부서 동래구 보건소(051-550-6734)

약국 양도 양수 절차 간소화

24

개선배경

· 약국의 영업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양도자의 기존업소 폐업신고 후, 양수인이 신규 개설 등록하는 절차로 약국 업무 공백기간 발생 및 신규등록 처리절차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약국 현황 : 총 143개소
약국 개설등록('15.) : 19개소(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등록 건수 ▷ 11개소)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약국 양도 양수시) - 양도인 폐업 신고 후 양수인 신규 등록으로 이원화	»	**(약국 양도 양수시)** - 약국개설자 변경등록 일원화

· 지역 규제개혁 과제 제출('16. 2.), 행정안전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 과제로 선정('16.12.), 약국 양도 양수시 약국개설자 변경등록(영업자 지위승계) 일원화하는 약사법 개정('19. 1.)·시행('19. 7.)

개선효과

· **약국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제7장

농림 해양수산

25. 수상레저(요트)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26. 해양자연사박물관 시설 대관허가 제한 완화
27. 숭어들망 포획방법 개선을 통한 어업환경 개선
28. 동(洞)지역 어촌민박 가능지역 지정
29. 조례 제정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051-888-2601)

수상레저(요트)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25

개선배경

- 수상레저(요트, 보트 등 5톤 이상) 승선·운항은 해양경찰청의 일반조정면허와 해양수산청의 소형선박조정면허(해기사면허-한정면허)를 취득후 승선·운항 가능함.
- 소형선박조종면허는 '일반조정면허증' 소지자에게 조건없이 배부되어 요식행위에 불가하고, 2개 기관의 장거리 방문 불편 및 이중 절차로 장기간 소요

개선내용

개선 전

(일반조정면허)
- 해양경찰청 방문 신청

(소형선박조종면허)
- 해양수산청 방문 신청
- 일반조정면허, 사진 제출

개선 후

(일반조정면허)
- 해양경찰청 방문 신청

(소형선박조정면허)
- 일반조정면허 신청시 우편 신청 가능*

* 해양경찰청에서 일반조정면허 발급 신청시 소형선박조정면허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로 한정면허 발급 신청서 우편 발송 처리

- 부산시 규제혁신토론회 안건 상정('18.11.), 소형선박조정면허 발급 절차 개선('19.)

개선효과

- **신규 소형선박조정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로 시민 불편 해소**





추진부서 해양자연사박물관(051-550-8824),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1)

해양자연사박물관 시설 대관허가 제한 완화 26

개선배경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거나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관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과거 이력을 사유로 대관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대관허가 제한)
-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사실이 있는 자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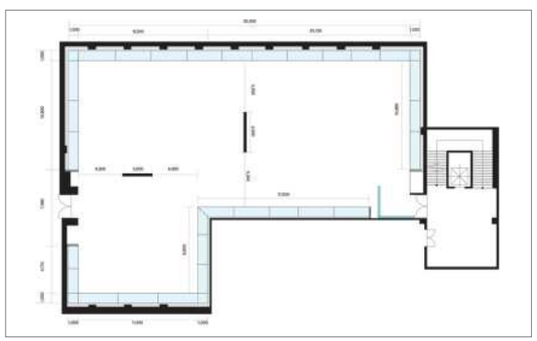
(대관허가 제한)
-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만 해당

-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17. 2.~7.) 개선과제로 선정, 시설 대관 허가 관련 규제를 일부 폐지하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개정('18. 8.)

개선효과

-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익 향상**





추진부서 강서구 해양수산과 (051-970-4505)

숭어들망 포획방법 개선을 통한 어업환경 개선 27

개선배경

- 가덕도 앞바다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으로 예로부터 숭어가 유명한 곳으로, '가덕도 숭어잡이'라 하여 160여년 전통방식으로 조업하여 왔음
- 숭어 들망어업*은 최근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사실상 조업 불가하여 들망어업을 보전할 수 있는 현대화된 기계식 조업방법 도입 추진 필요

* 숭어가 들기 쉬운 길목에 그물을 깔아두고 기다리다가 육지 망루에서 망을 보던 어로장이 물 빛깔과 그림자 등을 보고 신호를 하면 배에 탄 어업인들이 일제히 그물을 들어 올려 고기를 잡는 전통 어법 / (투입규모) 배 : 6척, 인력 : 20여명

개선내용

개선 전

(어획방법)

- 인력에 의한 인망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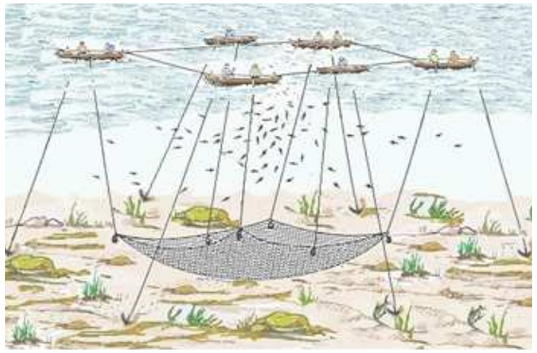
(어획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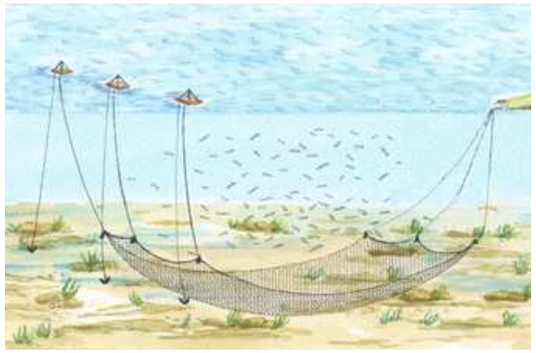
- 인력, 양망동력 장치 등 가능

- 어구·어법 현대화 건의 및 시험어업 추진('16. 6.~'17. 4.), 어구·어법 개정관련 타지자체와 연계 추진 협의('18. 4., 부산 강서구, 부산시, 거제시, 경남도), 숭어들망 포획방법 개선을 위한 법령(해수부) 건의('18.10.),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19. 3.)

개선효과

- **어업 안전 확보와 저인력 투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유지**





추진부서 강서구 해양수산과 (051-970-4505)

동(洞) 지역 어촌민박 가능지역 지정 28

개선배경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15.12.)으로 '어촌'의 범위가 읍·면 지역에서 동(洞) 지역으로 확대되어 동(洞) 지역도 어촌민박 가능
- 법령상 어촌지역 범위를 특정하기에 모호하여 민박신고 업무 처리 시 법령과 행정 괴리 발생하여 불법 민박 난립 방지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어촌 민박 가능 지역)

- 법령상 "동(洞") 지역범위 해석 모호

개선 후

(어촌 민박 가능 지역)

- 강서구 내 "동(洞") 지역범위 지정
- 가덕도내 가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폐지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15.12.), 해수부, KMI, 강서구 등 어촌민박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16. 1.~'18. 5.), 가덕도내 어촌민박이 가능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촌민박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정('18.10.)

개선효과

- **어촌민박사업 관련 지침 마련으로 불법 민박시설 난립방지 및 사후관리 철저**
- **가덕도내 어촌민박사업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 기여**





추진부서 기장군 친환경농업과(051-709-4241)

조례 제정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9

개선배경

-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 중인 체험농가 대부분 시설이 미비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농촌체험관광)

- 체험농가·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홍보 등 미흡

개선 후

(농촌체험관광)

- 조례 제정을 통한 체험농가·체험프로그램 운영 체계적 관리

-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시행('17.12.), 체험농가 지원 및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운영('18. 4.)

개선효과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속적인 체험농가 추가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제8장

산업 및 중소기업

30. 데이터센터 신축관련 건축규제 개선
31. VR(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중복 규제 일원화
32. 화학물질관리 기술인력 선임 기준 완화
33. 공공자원 개방을 통한 청년 비즈니스 공간 제공
34. 청소대행업체 구조 및 선정방법 개선
35.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절차 규제 완화
36.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사유 명확화
37.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 설치가능토록 규제 개선
38. 전기차 폐차 후 반납된 장치·부품에 대한 사후활용 규정 마련



추진부서 건축정책과(051-888-4291), 규제혁신추진단(051-888-2602)

데이터센터 신축관련 건축규제 개선 30

개선배경

- 「건축법 시행령」('18. 9.) 개정으로 산업단지내 데이터센터 건축물은 종전과 달리 조경시설 설치대상이 되어 조경시설로 인해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규제혁신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대지 안의 조경설치 건축물)

-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

개선 후

(대지 안의 조경설치 건축물)

-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 제외

- '찾아가는 규제해결사 오반장'이 산업단지내 기업 방문('19. 4.), 관련 부서와 규제혁신 협의('19. 5.),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개정 공포('19. 7.)

개선효과

- 정보산업 집적을 통한 지역산업단지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부산시, 조경 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 포함…조례개정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051-888-2595), 부산정보산업진흥원(051-749-9192)

VR(가상증강현실)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중복 규제 일원화 31

개선배경

- VR 테마파크 사업자가 신규 VR콘텐츠 및 기기의 허가를 받을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관광진흥법」, 「게임산업법」을 적용받아 기업 경영 애로

개선내용

개선 전

(중복 규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개선 후

(중복 규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으로 규제 일원화

* 제2조(정의)에서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게임물에 포함함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이 VR기업지원센터를 방문('18. 3.)하여 기업애로 사항 접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네거티브 방식 확산 발굴 과제로 선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8. 6.)

개선효과

- VR 산업에 대한 중복규제와 규제혼선 탈피, 관련 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 기여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051-888-2601)

화학물질관리 기술인력 선임 기준 완화 32

개선배경

- 「화학물질관리법」개정으로 종업원 10인 이상의 도금업체는 기술인력(유해 화학물질관리자)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함
- 그러나, 자격증(기사 또는 기술사) 소지자가 부족하여 도금업체의 경우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개선내용

개선 전

(기술인력 기준)

- 종업원 30인 미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1명이상 선임

»

개선 후

(기술인력 기준)

- 일정기간 양성교육 이수하는 등 자격 갖춘 사람도 자격 부여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으로 기업 애로 사항 규제건의('18.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8.10.)

개선효과

- **기업규제 해소로 안정적 기업 운영에 기여**





추진부서 남구 일자리경제과(607-4292)

공공자원 개방을 통한 청년 비즈니스 공간 제공 33

개선배경

- 인근 대학이 4개나 있는 지역특성상 취업,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 기존 시설 이용 및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와 연계한 방안 모색

개선내용

개선 전

(청사 내 북카페)

- 북카페로만 운영

»

개선 후

(청사 내 북카페)

- 청년 비즈니스 공간으로 무료 개방 평일 09:00~19:00

- 공간 재배치 및 시설 구비(회의용 테이블 구입, 인터넷 회선 증설 등)('19. 3.), 청년 비즈니스 공간 "공유누리" 개방('19. 4.)

개선효과

-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비즈니스 공간(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 키오스크, 창업관련서적, 컴퓨터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추진부서 금정구 자원순환과 (051-519-4432)

청소 대행업체 구조 및 선정방법 개선

34

개선배경

- 금정구 개청 이래 30년간 청소대행업체의 독점적 구조 타파와 각종 비리, 위법사항 발생 등 불법 행위 근절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청소대행업체)

- 2개 업체 독점구조
- 구 전체 2개 구역으로 나눔

개선 후

(청소대행업체)

- 공개경쟁 체재 전환
- 신규 업체 선정 (총 3개 업체)

- 청소 대행업체 모집·평가, 현장실사('19. 1.), 신규 대행업체 선정('19. 2.), 허가신청('19. 5.), 청소대행기간(~'19.12.)

개선효과

- 청소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추진부서 연제구 환경위생과 (051-665-441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절차 규제 완화

35

개선배경

- 대표자가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고 수리함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 형태의 영업이며, 부적합 사유로 영업신고를 제한한 경우가 전무하나, 신원 조회 의뢰 및 회신 절차로 수리 기간이 3일 정도 소요되어 영업자의 불편 초래

개선내용

개선 전

(영업신고 시)

- 등록기준지로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
  3일정도 소요

개선 후

(영업신고 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 즉시 가능

- 기업애로 규제 건의('18.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18. 9.)

개선효과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원 조회 시,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민원편의 증대 및 행정효율성 제고





추진부서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1)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사유 명확화 36

개선배경

-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규정함
- 조례에서는 조정 거부 사유를 열거 규정하여 위원회의 자율적인 조정 거부 결정 범위 제한함

개선내용

개선 전

(위원회 조정 거부 사유)

- 한정적 열거

개선 후

(위원회 조정 거부 사유)

- 해당규정 삭제

-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18.)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18. 6.)

개선효과

-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 확대 및 주민 권익 증진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개 정 전	개 정 후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2> 1.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삭제> 2018.6.28.
②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진부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601), 제조혁신기반과(051-888-4642)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 설치가능토록 규제 개선 37

개선배경

- 초·중·고생을 비롯한 일반인의 체험, 취미, 산업화 및 드론 스포츠대회 추진 등 급격한 드론 관련 인구 증가에 대처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하천구역내 드론 공원)

- 설치 불가

개선 후

(하천구역내 드론 공원)

- 설치 가능

- "2018 드론쇼 코리아"행사장 내 운영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18. 1.)를 통해 규제 건의, 하천구역내 드론공원 설치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고시 개정('18.10.)

개선효과

- 부산시역내 하천구역을 드론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하천 생태·환경보전 및 하천구역 문화·휴식공간 활용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





추진부서 부산상공회의소(051-990-7065),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565)

전기차 폐차 후 반납된 장치·부품에 대한 사후활용 규정 마련 38

개선배경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등록 말소시 폐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반납 이후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관한 법령 부재
- 반납된 폐배터리의 모듈 등 핵심장치에 대한 재활용기준 및 지침 등 사후활용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폐배터리 처리 기준)

- 근거 규정 없음

개선 후

(폐배터리 처리 기준)

-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및 재활용 기준 마련

- 규제혁신 과제 발굴('18. 5.), 규제혁신 민관합동토론회 안건 상정('18.11.), 환경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정('18.12.)

개선효과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신산업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제9장

수송 및 교통

39. 부산진구 전역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40. 국유지 활용한 주차난 해소
41. 수영세무서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추진부서 부산진구 주차관리과 (051-605-4562)

부산진구 전역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39

개선배경

-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식당가 차량이용객 방문불편으로 지역상인 및 주민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단속유예 시 보행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한 대책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 주·정차 단속 실시

개선 후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 유예시간 : 12:00 ~ 14:00
  유예지역 : 부산진구 전역
  단, 제외지역* 단속 실시

* 제외지역 :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곡각지 불법 주·정차 차량, 교통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범운영('18.10.),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전면시행('18.11.)

개선효과

- 점심시간대 차량 이용객의 방문 불편 해소와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기대





부산진구 전역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부산진구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라 10월 한 달간 시범 운영된다.

단속 유예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이며 이 시간대에는 부산진구 전역의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점심시간대에 불법 주정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단속차량을 보내 차주와 업주에게 연락하고 차량을 이동시켜 민원을 해결할 방침으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단, 보행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행위는 인력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곡각지 등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된다. 이중주차나 적재주차 등 주차방법을 위반한 차량도 단속대상이다.

부산진구는 10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교통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한 뒤 개선책을 마련해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본부 news@busan.com

추진부서 남구 교통행정과(051-607-4556)

국유지 활용한 주차난 해소 40

개선배경

- 남구 용호동 주택가 일대 심각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 가중되어 주차장 확보 필요성 대두

개선내용

개선 전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 미개방

개선 후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 무료개방
  평일 18:00 ~ 익일 09:00
  토·일·공휴일 00시 ~ 24시

- 부산지방경찰청, 운전면허시험장과 주차장 개방관련 지속적 협의('18. 8.), 시설개선공사(무인주차 차단기, CCTV 설치, 진입로 확장 등) 실시('18.12.), 주차장(52면) 무료 개방('19. 1.)

개선효과

- 주차장 개방으로 용호동 일대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추진부서 수영구 교통행정과(051-610-4554)

수영세무서 부설주차장 개방 추진

41

개선배경

- 남천동 일대 식당가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차량소통에 지장 초래
- 인근 토지가격 급상승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큼

개선내용

개선 전

(수영세무서 부설주차장)

- 업무시간 외 주차장 이용 불가

개선 후

(수영세무서 부설주차장)

- 평일 18:00~익일 08:00, 공휴일 전일 무료개방

- 수영세무서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관련 지속적 협의('16. 8.~'17. 7.), 수영세무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협약 체결('18. 7.)

개선효과

▪ 야간시간대 유휴 주차공간 활용으로 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및 기존 주차장 활용으로 예산 절감





제10장

국토 및 지역개발

42. 건설업(종합·전문)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4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
44.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개정
45.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대상요건 완화
46. 동삼하리지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으로 개발사업 기틀 마련
47. 구유지 매각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부담 경감
48. 공동주택관리지원 방법 개선
49.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50.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건설업(종합·전문)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42

개선배경

- 종합(토목, 건축 등) 및 전문(실내건축, 도장 등)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면허등록조건으로 일정 금액이상의 자본금* 확보 필요
- 등록기준 특례 시행**('10. 2.11.) 이전 2개 이상의 다수업종 보유업체의 경우 특례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여 자본금 부족에 따른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영업정지 등으로 기업 애로 발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종합건설업 △토목(10억) △건축(7억) △산업·환경(17억) △조경(10억) 등
- 전문건설업 △실내건축(1.5억) △도장(1.5억) △철도·궤도(4억) △포장(4억) 등

** 건설공사가 다수 면허를 보유할 경우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기존 업종을 위한 최저 자본금 기준 50%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50%까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개선내용

개선 전

(자본금 등록기준)

- 종합 및 전문건설업 일정금액이상 자본금 필요

개선 후

(자본금 등록기준)

- 자본금 단계적 하향 조정 (1단계) 70%, (2단계) 50%(예정)

-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을 통한 규제건의('19. 4.),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와 규제개선 협의('19. 5.~6.), 1단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19. 6.), 2단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19.12.) 예정

개선효과

- **적은 자본금으로 신규 건설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전국 8,400여개 업체 혜택**


사회

부산시 "기업 규제 줄기"… 건설업 자본금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제정 43

개선배경

- 빈집 증가에 따른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등 지원 규정 마련

개선내용

개선 전

(빈집 관리)

- 규정 없음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포함

개선 후

(빈집 관리)

-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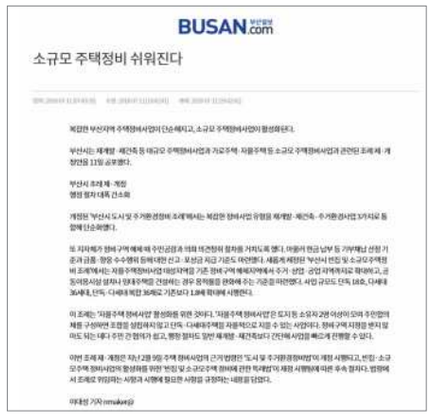
(소규모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에 관련 규정 명시

- 국토부에 법령 제정 건의(빈집 정비,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분리하여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18. 2. 시행)

개선효과

- **부산시 소재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도시재생 모델 구현**


BUSAN.com

소규모 주택정비 쉬워진다



추진부서 도시정비과(051-888-4222)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절차 개정

44

개선배경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을 경우 조합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요건을 갖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 조례 규정 없음

개선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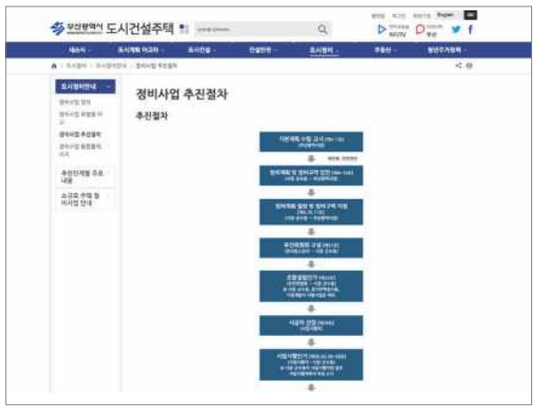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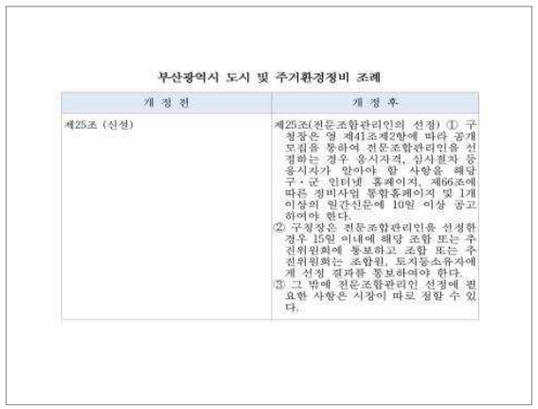
- 제25조(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신설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18. 7.)

개선효과

· 조합운영의 연속성, 안정성 등 업무추진 공백 방지에 기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 정 전	개 정 후
제25조 (신설)	제25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제66조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 통보하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추진부서 도시정비과(051-888-42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대상요건 완화

45

개선배경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요건으로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30% 이상이어야 함.
-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 보완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무허가 건축물 수)

- 대상구역안 건축물 총수의 30% 이상인 지역

개선 후

(무허가 건축물 수)

- 대상구역안 건축물 총수의 20%이상인 지역

-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17. 2.~6.) 개선 과제로 선정,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시행('18. 7.)

개선효과

·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슬럼화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대





추진부서 영도구 해양수산과(051-419-4454)

동삼하리지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으로 개발사업 기틀 마련

46

개선배경

-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으로 매립 조성한 동삼하리지구는 관광·문화·호텔·컨벤션 등 다양한 테마와 첨단건축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중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한 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목적한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아 개별 법령 규정간 배치된 해석으로 사업시행 차질

개선내용

개선 전



(토지이용계획)

- 근린생활시설, 도로, 공원, 녹지, 호안, 공동위판장, 주차장

개선 후



(토지이용계획)

- 상업용지, 도로, 공원, 녹지, 호안, 물양장, 주차장, 공공공지, 정압장, 어민회관, 공공청사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신청(영도구→부산지방해양수산청)('17.10.),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대상 여부)('17.11.), 낙동강유역환경청, 해양수산부와 협의('17.11.~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개정('18. 1.)

개선효과

- **동삼하리지구의 통합적 복합개발에 따른 지역 생산기반 강화,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민간자본 3,795억원 투자 유치**

추진부서 해운대구 재무과 (051-749-4155)

구유지 매각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부담 경감

47

개선배경

- 공유재산(구유지) 매각시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에 있어 매수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개선내용

개선 전

(소액거래)

-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부담비율
  구 : 매수자 = 0 : 100

개선 후

(소액거래)

-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부담비율
  구 : 매수자 = 50 : 50

- 구유지 매각현황 분석 등 내부검토('18. 1.), 소액거래(3천만원 미만)의 경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를 구와 매수자가 50% 부담토록 시행

개선효과

- **매수인의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구유지 매각 활성화**





추진부서 금정구 건축과(051-519-4732)

공동주택관리지원 방법 개선

48

개선배경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비 증가 및 입주민간 갈등 초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적지원으로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개선내용

개선 전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비 지원

개선 후

(공동주택 관리)

- 전담팀 신설, 관리지원단 구성
- 전문적, 체계적 공동주택 관리지원*

*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19. 1.),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운영('19. 1.~),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 북 제작·배포('19. 1.~4.)

· 공동주택 관리지원팀 신설('18. 7.),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방문 조사('18. 9. ~'19. 6.),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19. 1.),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19. 3.)

개선효과

·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향상





추진부서 사상구 청소행정과(051-310-4442)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49

개선배경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7. 5.)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

개선내용

개선 전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만 가능

개선 후

(개방화장실 지정 기준)

- 일정 규모 미만*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가능

*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요청할 경우

·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관련 자치법규 정비대상('18.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18. 6.)

개선효과

· 개방화장실의 지정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





추진부서 기장군 행정지원과(051-709-4112)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50

개선배경

- 개발제한구역 내에 목욕장은 민간 개인·단체·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대다수 주민이 이동이 곤란한 노인층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목욕장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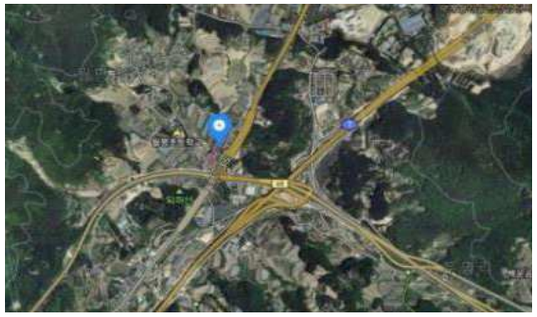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개발제한구역내 목욕장 설치) - 마을 공동 설치·이용하는 경우만 가능	**(개발제한구역내 목욕장 설치)** - 지방자치단체도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정관읍) 주민, 복지회관(목욕장 포함) 건립 요청('17. 2.), '18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17. 9.), 지방자치단체가 목욕장 설치가능토록 법령 개정 건의('18.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8.12.)

개선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목욕장 설치로 주민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부록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불합리한 규제는 신고바랍니다.

규제신고처

온라인(인터넷)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
규제건의 › 건의신청

중소기업 옴부즈만
www.osmb.go.kr
중소기업 옴부즈만 › 규제애로신고

방문·전화

구분	방문	전화 (지역번호 051)
부산광역시(본청)	규제혁신추진단	☏ 888-2591~6, 2601~2604
중구	기획감사실	☏ 600-4015
서구	기획감사실	☏ 240-4031
동구	기획감사실	☏ 440-4034
영도구	기획감사실	☏ 419-4081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 605-4031
동래구	기획감사실	☏ 550-4041
남구	기획조정실	☏ 607-4036
북구	기획감사실	☏ 309-4034
해운대구	감사담당관실	☏ 749-6225, 6221
사하구	기획실	☏ 220-4311
금정구	기획감사실	☏ 519-4032
강서구	기획감사실	☏ 970-4032
연제구	기획감사실	☏ 665-4031
수영구	기획감사실	☏ 610-4034
사상구	기획감사실	☏ 310-4035
기장군	기획청렴실	☏ 709-4031

규제신고 처리절차

중앙규제(중앙부처의 법령·인허가 행태 규제)

온라인



방문·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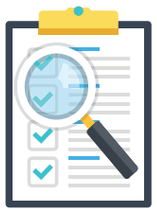
지방규제(지자체의 조례·규칙·인허가 행태 규제)

온라인



방문·접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용하세요.

사전 컨설팅 감사란?

공무원 등이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대상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신청 방법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무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사무



※ 시, 구·군 등 감사부서에서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원 신청

결과 조치

컨설팅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통보 또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컨설팅 의뢰

2019 부산광역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50선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부산이 규제혁신도시로 거듭납니다.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TEL : 051) 888~2596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